

第47回沙下區議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 4 號

釜山廣域市沙下區議會事務局

日時 1995年12月23日(土)

場所 小會議室

議事日程

1. 1995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

審査된案件

1. 1995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(沙下區廳長提出) 1 面

(10時37分 開議)

○委員長 金祥洙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.

成員이 되었으므로 第47回沙下區議會(定期會)豫算決算特別委員會 第4次 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.

○委員長 金祥洙 議事日程 第1項 1995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.

그러면 本 豫算案은 95年 12月19日 第5次 本會議에서 提案說明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.

○專門委員 黃海龍 95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.

1. 1995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(沙下區廳長提出)

(報 告)

1. 제안이유

- 세입은, '95수입원별 목표액 초과 또는 미달된 세입의 정리 및 국·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액을 정리하고
- 세출예산은 법정경비의 정리 및 계획변경 등에 의한 사업예산 조정 등을 위해 제2회 추가경정 예산(안)을 편성,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세 입

(금액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제2회 추경(안)	기 정 예 산	증 감	
			금 액	%
계	77,420	76,340	1,080	1.4
일 반 회 계	67,676	67,371	305	0.5
지 방 세	16,589	17,216	△ 627	△ 3.6
세 외 수 입	15,776	17,736	△1,960	△ 11.1
조 정 교 부 금	18,921	18,921	—	—
국·시비보조금	14,808	11,708	3,100	26.5
지 정 재 원	1,582	1,790	△ 208	△ 11.6
특 별 회 계 (7 중)	9,744	8,969	775	8.6

〈 주 요 내 역 〉

- 일반회계
- 지 방 세 : 면허세 중 97 사업소세 중 242백만원
 - 재 산 세 △ 860 종합토지세 △ 106백만원
 - 세외수입 : 수수료 수입 △ 227, 징수교부금 수입 △ 573,
잡수입 △ 929백만원 등
 - 국고보조 : △ 241백만원, 시비보조금 3,341백만원
- 특별회계
- 의 료 보 호 기 금 : 중 511,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500백만원
 - 영세민생활안정기금 : △ 39, 장림유수지이설사업 △ 197백만원

나. 세 출

(금액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제2회 추경(안)	기 정 예 산	증 감	
			금 액	%
계	77,420	76,340	1,080	1.4
일 반 회 계	67,676	67,371	305	0.5
의 회 비	761	840	△ 79	△ 9.4
일 반 행 정 비	28,724	26,092	2,632	10.1
사 회 복 지 비	16,715	17,573	△ 858	△ 4.9
산 업 경 제 비	1,112	1,107	5	0.5
지 역 개 발 비	15,471	15,975	△ 504	△ 3.2
문 화 체 육 비	3,511	4,144	△ 633	△ 15.3
민 방 위 비 · 기 타	1,382	1,640	△ 258	△ 15.7
특 별 회 계	9,744	8,969	775	8.6

〈 주 요 내 역 〉

○ 일반회계

- 필 수 경 비 — 증 2,497백만원 (인건비 △501, 세입관련경비 △190 국·시비보조사업정리(48건) 3,125백만원 등)
- 경상사업비 — △ 1,193백만원 (지방선거경비 등 기타 경상경비 △1,143, 의원해의시찰여비 △60백만원 등)
- 투자사업비 — △ 698백만원
 - └─ 괴정3동 국민은행 뒤 도로개설 306 등 추가사업비 1,342백만원
 - └─ 신평레포츠공원 실내수영장 설치외 9건 △927백만원 등 삭감 2,040백만원
- 예 비 비 — △ 301백만원 (747 ⇒ 446백만원)

○ 특별회계 — 의료보호, 주거환경개선사업 증 1,011백만원, 영세민생활안정, 유수지이설사업 △ 236백만원

○ 명시이월사업 — 구청사 신축이전 부지매입 1,953, 당리천 잔여구간복개 976백만원 등 8건 4,678백만원

3. 검토의견

가. 일반회계

○ 세 입

- '95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는 증가되었으나, 지방세중 재산세의 경우 금년도 목표액을 무리하게 책정함으로써 실제 징수액은 목표보다 17.6%인 860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,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폐기물수집 수수료, 시세징수교부금수입, 경영수익사업수입 등 1,960백만원 감소됨으로써 세입에 차질을 초래하게 되어 금년도 계획된 사업의 축소, 중단 등의 우려도 있었으나
- 구청사체비지 매입비 35억원이 시비보조됨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는 해소되었습니다.
- 금후 재산세, 종합토지세 등과 같이 우리구 재정의 큰 몫을 차지하는 구세에 대하여는 세밀한 분석과 전망으로 목표액을 적정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며,

- 목표액의 과다설정으로 인하여 시에서 지원받게 되는 조정교부금의 규모를 산정하는데도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목별 목표액 설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○ 세 출

- 세출부분에 있어서는,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국·시비 보조사업비 등이 일부 가감됨으로써 정산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세출 예산을 정리하였으며
- 일부 경상사업비 잔액의 삭감 이외 투자사업비의 경우, 사업 시행효과가 적은 신평레포츠공원내 실내수영장 설치 사업비의 삭감과 장림2동 효림국교 주변도로개설 및 괴정1동 948번지 일원 도로개설 등 7건의 사업관련 토지매입비 중 과다계상된 1,355백만원 등 투자사업부문 예산 2,040백만원을 삭감하는 대신 낙동로 ~ 동덕APT간 도로개설, 당리천 잔여구간 복개, 괴정3동 국민은행 뒤 도로개설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부족한 토지매입비를 추가계상한 것과 66호 광장 일원 도로개설사업을 추가 선정한 것 등은 당면한 교통난 및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계획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예산을 조정 편성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금년도 “등산로 정비” 예산 80백만원중 절반인 40백만원만 집행되었음은 내년 예산에 “등산로 정비”사업비에 20백만원이 계상된 것과 관련하여 볼 때,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인지, 축소된 것인지 등에 대한 확인,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
- 이제 금년도 며칠남지 않은 지금, 예산이 변경, 조정된 사업은 내년도로 이월될 수밖에 내년도 계획사업 추진과 함께 사업이 부실하게 되거나 추진이 지연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나. 특별회계

-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, 국·시비 보조금 511백만원이 증가되어 이를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에 지출하게 되며
- 영세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는, '94년도 순세계 잉여금의 감소로 인하여 안정기금융자 채원규모를 축소 조정하였으며
-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는,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5억원을 신평 2지구내 도로개설사업비 부족분에 충당하게 되며
- 장림유수지 이설사업은, 민간투자자 선수금 등 잡수입의 감소로 고지배수로 설치사업관련 예산을 이에 맞게 축소조정한 것임.